

중소기업 미래성과공유제(기업용)

2020. 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미래성과공유제란?

- 사업주-근로자가 경영성과를 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
-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정부정책 우대를 통해 기업성장지원

□ 성과공유기업 정의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27조의2 1항]

< 성과공유 유형 >

구분	제도내용	
① 성과급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을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우리사주 포함)	
② 성과보상 공제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가입)	
③ 임금수준의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것·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보다 클것	
④ 우리사주 제도 운영	우리사주조합 제도 운영	
⑤ 복지기금 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⑥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	①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②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③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④ 가족친화 인증기업	여성가족부(한국경영인증원)
	⑤ 노사문화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사발전재단)
	⑥ 청년친화 강소기업	고용노동부(중소기업중앙회)
	⑦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업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⑧ 근로자휴가지원사업선정기업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 유형(①~⑥) 중 미래에 도입하기로 협약 ⇒ 미래성과공유기업
- 유형(①~⑦) 중 한 개 이상 제도를 이미 도입 ⇒ 성과공유도입기업

□ 성과공유기업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

- 미래성과공유기업 : 성과공유 협약서 온라인 등록 제출
- 성과공유 도입기업 : 도입증빙자료 제출 및 아래 요건 충족
 - ❶ 상시근로자 1인당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 * 해당 유형 : ①성과급, ②성과보상기금공제, ④사내근로복지기금, ⑤우리사주, ⑥주식매수선택권
 - ❷ 사업주가 성과공유를 위하여 지급 또는 출연한 금액이 성과공유 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일 것
 - * 해당유형 : 1) 성과급, 2) 성과보상기금공제, 6) 주식매수선택권

□ 성과공유기업 우대혜택

구분	지원혜택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자격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업지원자금(일자리창출촉진-인재육성 부문)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 기업에 지원,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 용자 한도 : 개별 기업당 60억 이내(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이내, 투자자금 연간 20억원 이내)
중기부 사업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지원사업(R&D, 수출) 선정 평가 시 '일자리평가' 항목에 최대 30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유형 : 미래성과공유 협약, 스톡옵션 부여, 우리사주 운영, 내일채움공제 등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평가 시 점수 반영 ·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점수 반영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공유 도입 우수기업의 대표자를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매년 선정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 기업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 12명 (2회) 14명 (3회) 10명 · 성과공유 모범기업 우수사례집 수록
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성과급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근로자 세제지원) 성과급 수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분의 50% 세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 '19.1.1 이후 '성과급' 도입 유형으로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받은 중소 기업 및 근로자 '19년도 영업이익이 있는 중소기업만 해당 * 관련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2

□ 신청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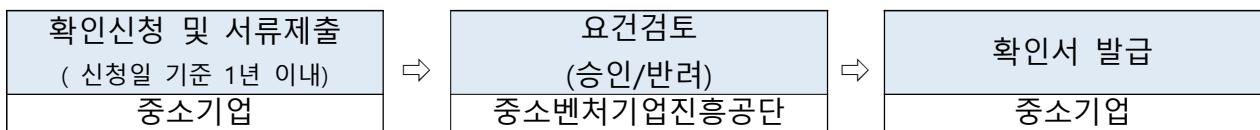
① 성과공유제 도입예정 기업(미래성과공유기업)

② 성과공유제 도입완료 기업(성과공유 도입기업)

□ **신청사이트**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 (<https://sanhakin.mss.go.kr>)

* 네이버 검색창에 : **산학인** **미래성과공유제** **입력**

□ 신청 확인 절차



① 미래성과공유기업 (미래에 성과공유제 도입 예정기업)

- 기업회원가입, 로그인
- [신청관리 – 미래성과공유기업 신청] 클릭
- [기업정보 등록] 탭 : 기업의 기본정보 입력
- [협약내용 및 협약서 출력] 성과공유 유형중 1개 이상 선택, 출력

<성과공유 유형 >

① 경영성과급 ②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청년공제) ③ 임금상승률
④ 우리사주제 운영 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⑥ 주식매수선택권
- [서명 협약서 등록] 출력한 협약서에 대표자 및 근로자 대표의 서명 후 스캔파일을 등록
- 중진공(메인비즈) 승인 → (1~2일내 승인)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출력

※ (발급 버튼까지 클릭 해야 일자리 평가점수 반영됨)

② 성과공유 도입기업 (이미 성과공유제 도입완료한 기업)

- 기업회원가입, 로그인
- [신청관리 – 성과공유 도입기업 신청] 클릭
- [신청정보] 탭 : 기업의 기본정보 입력
- [확인서류 등록] 현재 도입하고 있는 성과공유 증빙서류 업로드

< 성과공유 유형 >

- ① 경영성과급
- ②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청년공제)
- ③ 임금상승률
- ④ 우리사주제 운영
- 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 ⑥ 주식매수선택권
- ⑦ 기타(인재육성형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 노사문화우수, 청년친화강소기업, 근로자휴가지원사업선정기업, 직장어린이집설치기업[*단,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중소기업 제외])

- [신청완료] 클릭
- 중진공(메인비즈) 승인 → (1~2일내 승인)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출력
※ (발급 버튼까지 클릭 해야 일자리 평가점수 반영됨)

□ 확인서 유효기간

- (미래성과공유기업) 1년, 최초1회만 인정, 유효기간 内 성과공유 실적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받으면 성과공유기업 자격 유지
- (성과공유 도입기업) 1년, 유효기간 後 성과공유 도입실적을 증빙하는 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재확인 신청 후 연장 가능

□ [성과공유협약 및 확인서 발급 문의처]

- 메인비즈협회 ☎ 02-2230-216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055-751-9035(9829)

참고2

성과공유기업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

※ 기준 :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18.9.13시행)

※ 모든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1년이내 실적이어야 함

① 미래성과공유기업 (성과공유 도입 예정기업)

제출서류	지정(확인)요건
미래성과공유협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업체명 및 대표자명 확인, '근로자대표' 재직 여부서명(대표자 및 근로자 대표)

② 성과공유 도입기업 (성과공유 도입완료 기업)

① 성과급 지급

구분	제출서류명	지정(확인)요건
지급 형태	현금 (성과공유 상여금)	1. 급여명세서 2. 임금대장(세무사확인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우리 사주	1) 우리사주 무상 출연 약정서 2) 예탁일자별 예탁확인서 (조합원별 주식 예탁현황) 등
공통 서류	목표달성을 따른 지급기준이 포함된 약정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 협약, 미래성과공유협약서 중 하나	사업주가 성과공유를 위하여 지급 또는 출연한 금액이 성과공유 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

세제지원 신청 안내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 제출서류 (세제지원 신청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제출서류	확인기준
성과공유기업확인서	성과급 지급일 기준, 성과공유기업 여부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1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1항)

- 신청기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 9항, 10항)

⑨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적용대상 : '19.1.1 이후 '성과급' 도입 유형으로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 및 근로자,
'19년도 영업이익이 있는 중소기업만 해당

② 성과보상공제사업

제출서류	지정(확인)요건
1 공제가입증서 2 납부내역서 (공제부금납입확인서, 공제부금납입상세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 어느 하나에 1명 이상 가입하여야 한다 <p>(단,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50호 제3조9항2호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 단독으로 신청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가 성과공유를 위하여 지급 또는 출연한 금액이 성과공유 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일 것

③ 임금수준의 상승

제출서류	지정(확인)요건
세금신고서, 세액공제확인서 등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동법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임금상승에 따른 세액공제

④ 우리사주제도 운영

제출서류	지정(확인)요건
1. 우리사주 설립통지확인서 2. 우리사주 무상 출연 약정서, 예탁일자별 예탁확인서(조합원별 주식 예탁현황) 등 지급 증빙 서류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사업주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근로자에게 우리사주를 지급하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실적이 있어야 함

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제출서류	지정(확인)요건
1 기금법인설립인가증 2 법인등기부등본 3 기부금영수증, 출연금 이체내역서 등 출연 증빙 서류	<p><1,2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운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인가를 받고,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주가 기금재원에 출연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⑥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제출서류	지정(확인)요건
1)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제도 도입 증빙서류	성과공유를 위해 지급 또는 출연한 금액이 성과공유 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일 것
2) 스톡옵션계약서	

<유형별 공통서류>

지정(확인)요건	제출서류	해당유형
상시근로자 1인당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 근로자의 경우 성과급을 제외한 임금총액이 근로계약으로 정 한 임금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최근 2개년도 임금대장 (세무사 확인필) 또는 근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내역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성과급 별도 구분표시	①성과급 ②성과보상기금공제 ④사내근로복지기금 ⑤우리사주 ⑥주식매수선택권 ※ 도입유형 中 ③임금 상승유형 外 모두 해당
* 모든 유형 신청 시 정보조회제공 동의서 제출		
* 업력 2년 미만 업체의 경우 최근 2개년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제출 필요		

⑦ 기타유형

구분	제출서류(유효기간 내)	발급기관
인재육성형중소기업	인재육성형중소기업 지정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서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인증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족친화 인증서	여성가족부 (한국경영인증원)
노사문화 우수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청년친화 강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서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확인서 (지원 결정 공문 등)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선정기업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참고3

성과공유 유형

구분	제도내용	
① 성과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우리사주 포함)	
② 성과보상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내용]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가입)[공제가입방법]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온라인 청약	
③ 임금수준의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보다 클것	
④ 우리사주 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 또는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	
⑤ 사내(공동) 근로복지 기금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근로자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한 기업출연 기금운영	
⑥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제도내용] 특정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도입방법]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내용 정관 규정에 기재 → 주주총회 결의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체결 ->(벤처기업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	
⑦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	인증명	소관부처(실시기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가족친화 인증기업	여성가족부(한국경영인증원)
	노사문화 우수기업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청년친화 강소기업	고용노동부(중소기업중앙회)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업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근로자휴가지원사업선정기업	문화체육부관광부(한국관광공사)

[별표 1]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평가 관련 제도개요 및 문의처

평가항목	내용 및 문의처
미래성과공유 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성과급 등을 통해 경영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겠다고 사전 협약하는 제도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내일채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 를 더하여 5년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800-7900, https://www.sbcplan.or.kr/
청년내일채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16백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공제제도 (문의처) 관할 고용복지+ 센터 (1350), http://www.work.go.kr/jobcenter
우리사주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 또는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하는 제도 (문의처)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 https://esop.ksfc.co.kr
스톡옵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특정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수령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재고용하여 고용을 안정시키는 사업주에게 인건비·간접노무비 등을 지원 (문의처) 고용부 관할 고용복지+ 센터 (1350), http://www.work.go.kr/jobcenter
근로시간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수령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 인건비 및 임금감소보전액 지원 (문의처) 고용부 고용복지+ 센터 (1350), http://www.work.go.kr/jobcenter
가족친화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6309-9048), http://www.ffsb.kr
청년친화강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305), http://www.work.go.kr/smallGiants
노사문화우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02-6021-1055), https://www.nosa.or.kr
인재육성형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16), http://www.hrdkorea.or.kr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경영체제 및 활동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받은 기업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052-7030-593), http://www.kosha.or.kr



발급번호 : 제2018-000013호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사업자번호(법인번호) 111-11-11126(111111-1111126)

기 업 명 test16

대표자명 대표16

유효기간 2018년 12월 13일 ~ 2019년 12월 12일

위 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 제27조의2에 따른 '성과공유기업'임을 확인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성과 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성과공유 유형 >

성과공유 유형

성과공유도입기업

미래성과공유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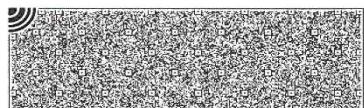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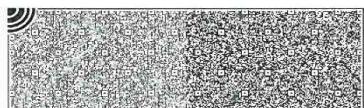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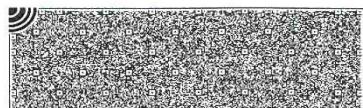
- | | |
|-------------------|-----------------------|
| ① 성과급 지급 | <input type="radio"/> |
| ②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 <input type="radio"/> |
| ③ 임금수준의 상승 | |
| ④ 우리사주제도 운영 | |
| 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 |
| ⑥ 주식매수선택권제도 부여 | <input type="radio"/> |
| ⑦ 기타유형 * | |

* ⑦ 기타유형: 인재육성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력자원개발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2018년 12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Red Seal]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정부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5

성과공유 도입 증빙자료(샘플)

[증빙서류] 성과공유 유형 1(성과급) : 임금대장

[별지 제17호서식]

임금대장

관리번호 :

42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증빙서류] 성과공유 유형 1-1(현금)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1)] <개정 2014.3.14>

(3쪽 중 제1쪽)

① 귀속
연도

소 득 자 별 근 로 소 득 원 천 징 수 부

정수 의무자 ④ 근무처 소 득 자	② 법인명(상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⑤ 성명 ⑧ 내외국인 구분 내국 인1/ 외국 인9	⑥ 주민등록번호 ⑨ 국적 (국적코드 :)	⑦ 입사일 퇴사일
	⑩ 공제대상가족의 수 (본인·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봄) ⑪ 20세 이하 자녀의 수	명	
	⑫ 감면 적용 여부 여 1, 부 2	⑬ 감면규정 ~	⑭ 감면기간 ~

I. 근로소득지급명세

월별	⑯ 지급 연월	1. 총 급여							2. 징수세액						
		⑯ 급여	⑰ 상여	⑱ 인정 상여	⑲ 주식 매수 선택 권 행사 이익	⑳ 우리 사주 조합 인출 금	㉑ 임원 퇴직 소득 금액 한도 초과 액	㉒ ~	㉓ ~	㉔ 계	간이세액표 적용 대상	그 외	㉕ 급여 구간	㉖ 소득 세	㉗ 소득세 (㉕+㉖)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297mm × 210mm [백상지 80g/m² (재활용품)]

[증빙서류] 성과공유 유형 1-1(현금)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개정 2017. 3. 10.>

(8쪽 중 제1쪽)

관리 번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table border="1"> <tr> <td>거주구분</td> <td>거주자1/비거주자2</td> </tr> <tr> <td>거주지국</td> <td>거주지국코드</td> </tr> <tr> <td>내·외국인</td> <td>내국인1/외국인9</td> </tr> <tr> <td colspan="2">외국인단일세율적용</td> <td>여 1 / 부 2</td> </tr> <tr> <td colspan="2">외국인소속 파견근로자 여부</td> <td>여 1 / 부 2</td> </tr> <tr> <td>국적</td> <td>국적코드</td> </tr> <tr> <td>세대주 여부</td> <td>세대주1, 세대원2</td> </tr> <tr> <td colspan="2">연말정산 구분</td> <td>계속근로1, 종도퇴사2</td> </tr> </table>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외국인	내국인1/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외국인소속 파견근로자 여부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 여부	세대주1, 세대원2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1, 종도퇴사2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외국인	내국인1/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외국인소속 파견근로자 여부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 여부	세대주1, 세대원2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1, 종도퇴사2																								
징수 의무자	(1) 법인명(상호)		(2) 대표자(성명)																							
	(3) 사업자등록번호		(4) 주민등록번호																							
소득자	(3)-1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여1 / 부2		(3)-2 종사업장 일련번호																					
	(5) 소재지(주소)																									
I 근 무 처 별 소 득 명 세	(6) 성명		(7)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8) 주소																									
	구분		주(현)	종(전)	종(전)	⑯-1 납세조합	합계																			
	(9) 근무처명																									
	(10) 사업자등록번호																									
	(11) 근무기간		~	~	~	~	~																			
	(12) 감면기간		~	~	~	~	~																			
	(13) 급여																									
	(14) 상여																									
	(15) 인정상여																									
	(15)-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15)-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15)-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15)-4																									
	(16) 계																									
	II 비 과 세 및 감 면 소 득 명 세	(18) 국외근로		MOX																						
(18)-1 야간근로수당		00X																								
(18)-2 출산·보육수당		Q0X																								
(18)-4 연구보조비		H0X																								
(18)-5																										
(18)-6																										
~																										
(18)-29																										
(19) 수련보조수당		Y22																								
(20) 비과세소득 계																										
(20)-1 감면소득 계																										
III 세 액 명 세	구분		⑯ 소득세	⑯ 지방소득세	⑯ 농어촌특별세																					
	(72) 결정세액																									
	기납부 세액	(73)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																								
	(74) 주(현)근무지																									
	(75) 납부특례세액																									
(76) 차감징수세액 (72)-(73)-(74)-(75)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정수(보고)의무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 (중소기업)

업체명:

대표자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위 기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 2에 의한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SBC

중소기업진흥공단





공제부금 납입 확인서 (중소기업용)

기준일: 2019.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성립일		납부조회기간	
가입자(핵심인력)		계약상태	정상

순번	납부일자	납부금액	납부인원	비고
1	2018-05-15	250,000		
2	2018-06-15	250,000		
3	2018-07-16	250,000		
4	2018-08-16	250,000		
5	2018-09-17	250,000		
6	2018-10-15	250,000		
7	2018-11-15	250,000		
8	2018-12-17	250,000		
9	2019-01-15	250,000		
10	2019-02-15	250,000		
11	2019-03-15	250,000		
합계		2,750,000		



공제부금 납입상세내역 (중소기업용)

순번	상품명	계약번호	계약자명	납부회	납부일자	납부금액
1	내일채움공제			1		250,000
2	내일채움공제			2		250,000
3	내일채움공제			3		250,000
4	내일채움공제			4		250,000
5	내일채움공제			5		250,000
6	내일채움공제			6		250,000
7	내일채움공제			7		250,000
8	내일채움공제			8		250,000
9	내일채움공제			9		250,000
10	내일채움공제			10		250,000
11	내일채움공제			11		250,000
합계						2,750,000

위와 같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 부금을 납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0의 3호에 따라 손비(법인)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로 인정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시행령 별표6의 제2호 라목,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의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2015.03.06 이후 법인세 신고분부터 적용)

2019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증빙서류] 성과공유 유형 3 : 임금수준의 상승

[별지 제8호서식(갑)] <개정 2020. 4. 21.>

(4쪽 중 제1쪽)

사업 연도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 대상세액	④ 감면(공제) 세액
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항 외	11O		
⑪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금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103		
⑫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수도권 밖으로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69		
⑬ 공장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1호	108		
⑭ 본사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	109		
⑮ 영농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104		
⑯ 영어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107		
⑰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1B		
⑱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	11A		
⑲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11N		
⑳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질수발송)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11F		
㉑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11H		
㉒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186		
㉓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187		
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188		
㉕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157		
㉖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158		
㉗ 기업도시 개발사업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159		
㉘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160		

세
액

(4쪽 중 제3쪽)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 전기 이월액	④ 당기발생액	⑤ 공제세 액
⑩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131			
⑪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14Z			
⑫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1항	14M			
⑬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2항	18D			
⑭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3항	18L			
⑮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13L			
⑯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13M			
⑰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	176			
⑱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14T			
⑲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14U			
⑳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18E			
㉑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18H			
㉒ 연구·인력개발비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1호	134			
㉓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2호	177			
㉔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3호	14A			
㉕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4호	142			
㉖ 안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5호	136			
㉗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6호	135			
㉘ 의약품 품질관리시설 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14B			
㉙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	18B			
㉚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18C			
㉛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18I			
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14N			
㉝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출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14S			
㉞ 경력단절 여성 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14X			
㉟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18I			
㉟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14Y			
㉟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18A			
㉟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18F			
㉟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14H			

세
액

공
제

** 4쪽 중 제3쪽 206번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받은 기업 **

[증빙서류] 성과공유 유형 4 : 우리사주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

발급번호			
명칭		설립통지일	
대표자		생년월일	
주사무소 소재지			
신청인 성명		신청일	

위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증빙서류] 성과공유 유형 5 : 사내근로복지지금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1.19.>

인가번호 제 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

1. 기금법인 명칭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표자 성명 :
 4. 대표자 생년월일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4항 또는 제86조의11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법인의 설립을 인가합니다.

四
四
四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스톡옵션 표준계약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스톡옵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을"의 선택권이 행사에 대해 "갑"이 교부할 주식은 "갑"이 발생한 기명식 보통주식 ○주로 한다.

제2조 【선택권의 부여방법】

"을"이 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갑은 제1항의 주식을 발행한다.

제3조 【부여일】

선택권의 부여일은 20 년 월 일로 한다.

제4조 【행사가격】

"을"이 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1주당 금액(이하 행사가격)은 금 ○○○원으로 한다.

제5조 【행사가격과 부여할 주식의 수의 조정】

1. 선택권의 부여일 미 후 선택권의 행사 전에 "갑"이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1조의 교부할 주식의 수 또는 제4조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 행사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2) 주식분할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하고 교부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한다.

3)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병합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증가하고 교부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병합비율의 역수로 감소한다.

4) 자본감소, 이익소각, 상환주식을 상환하여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경우: 교부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감소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행사가격은 다음 산식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행사가액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8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 미상이어야 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 1주당 주주환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2. 제1항에 의한 조정은 제1항 각 호의 사정이 생긴 때에 별도의 절차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행사기간】

선택권은 20 년 월 일 이후 20 년 월 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행사하지 아니한 선택권은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7조 【행사방법 및 절차】

1. "을"은 제6조의 기간 내에 제1조가 정한 주식수 또는 제5조에 의해 조정된 주식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선택권을 행사하거나 분할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을"이 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이 작성한 신주발행청구서 2통에 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갑"에



제 2017-0001 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기 업 명 :

대 표 자 :

주 소 :

유효기간 : 2017.12.20 ~ 2020.12.19

위 기업은 인재육성을 통해 기업성과를 향상시키고
공유하여 기업과 근로자들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되었기에 이 지정서를
수여합니다.

2017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서

인증번호 :

업체명 :

대표자명 :

주 소 :

유효기간 :

「발명진흥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위의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특 허 청



제 20 - 호

Best HRD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기 관 명 :

인증기간 :

위 기관은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기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합니다.

20 년 월 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 상 곤



인사혁신처장
김 판 석



제20 - 호



가족친화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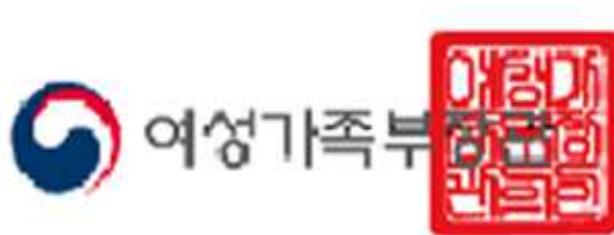
기관명 :

소재지 :

유효기간 :

위 기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기에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합니다.

20 년 월 일



제

호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서

(주)파

귀사는 노사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노사문화를 선도하여 20 '년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유효기간: 20 . . . ~ 20 . . .)

고용노동부장관



제 20 - 호



고용노동부

청년 친화 강소기업 인증서

기 업 명 :

소재지 :

인증기간 :

위 기업은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우수한
중소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청년 친화 강소기업임을 인증 합니다.

20 년 월 일

고용노동부장관



발급번호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증서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위 기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중인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2020년도 참여기업임을 확인하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0년 05월 06일

한국관광공사



본 증서의 발급일 이후 참여취소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센터(1670-1330)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